

주야간보호기간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

- 사업명: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
- 사업기간: '24년 1월 ~ 별도 통보 시까지 ('24년 신규 참여기관은 3월부터~)
- 이용대상: 장기요양 1~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(가족휴가제 이용 시에만 대상)
- 이용인원 : 주·야간보호 정원 규모별 1일 4~8명
(정원/이용인원) 30인~39인: 4명, 40인~49인: 6명, 50인 이상: 8명
※ 실제 이용은 주·야간보호기관의 침실 보유 규모에 따라 다름
- 이용일수: 단기보호 월9일 이내, 치매가족휴가제 년9일 이내(입소일 포함, 퇴소일 제외)
(가족휴가제) 연 10일 이내(입소일 포함, 퇴소일 제외)
※ (대상) 현행 2024년 고시 기준 1~
- 서비스내용: 수급자의 기능상태·욕구를 반영하여 신체활동
- 비용부담: 등급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이용시간에 본인부담금 산정(월 한도액 관리 필수)
- 인력기준 : 야간서비스 시간(22시~다음날08시) 요양보호사 등 1명 의무 배치
단, 층을 달리하는 서비스하는 경우 각층별로 요양보호사 배치
- 서비스비용
· 주·야간서비스비용(야간가산포함) + 야간운영비용(운영지원금 통합)
(주·야간서비스비용) 등급별 주·야간보호 최대 13시간 초과 비용 산정
(야간운영비용) 야간서비스(22시~다음날08시) 운영 시 기관 1일당 64,000원 산정
※ (운영지원금) 야간운영비용 통합지급, 5일 일수 제한 삭제(2023년)

1. 케어포에서 단기보호 및 장기요양가족휴가제(치매가족휴가제) 운영하기 위한 설정

- (1) 9-1-1.기초작업 및 기초설정 > 서비스 환경설정 : 변경을 눌러 단기보호 및 치매가족 휴가제를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설정합니다.

서비스 환경설정

치매전담실 운영	변경	치매전담실 운영여부 ?	3일까지 운영
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여부	변경	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여부 ?	운영함

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여부

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여부

☒ 운영함

저장

창닫기

- (2) 단기보호 및 치매가족 휴가제 운영을 설정한 경우 9-2. 요양급여 수가설정에 ‘가족휴가’에 대한 별도의 수가정보가 더 보여지게 됩니다. (가족휴가제의 경우 수가가 별도로 존재함)

공단 급여 수가 정보

급여 수가 변경내역

공단 급여수가 적용일		2024.01.01 ~ 2024.12.31					
구분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급여한도		2,069,900 원	1,869,600 원	1,455,800 원	1,341,800 원	1,151,600 원	643,700 원
3시간 미만	일반	31,850 원	29,480 원	27,220 원	25,980 원	24,740 원	24,740 원
	치매전담실		37,080 원	34,230 원	32,660 원	31,100 원	31,100 원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일반	39,810 원	36,850 원	34,020 원	32,740 원	30,920 원	30,920 원
	치매전담실		46,350 원	42,790 원	40,830 원	38,880 원	38,880 원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일반	53,360 원	49,420 원	45,620 원	44,070 원	42,500 원	42,500 원
	치매전담실		62,170 원	57,380 원	55,440 원	53,460 원	53,460 원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일반	66,360 원	61,480 원	56,760 원	55,210 원	53,640 원	53,640 원
	치매전담실		77,350 원	71,390 원	69,460 원	67,470 원	67,470 원
10시간 이상 ~ 13시간 이하	일반	73,110 원	67,720 원	62,570 원	61,000 원	59,450 원	53,640 원
	치매전담실		85,210 원	78,710 원	76,710 원	74,760 원	67,470 원
13시간 초과	일반	78,400 원	72,630 원	67,100 원	65,540 원	63,990 원	53,640 원
	치매전담실		91,340 원	84,420 원	82,440 원	80,480 원	67,470 원
가족휴가 12시간미만	일반	35,250 원	32,640 원	30,160 원	29,360 원	28,560 원	28,560 원
	치매전담실	35,250 원	32,640 원	30,160 원	29,360 원	28,560 원	28,560 원
가족휴가 12시간이상	일반	70,500 원	65,280 원	60,310 원	58,720 원	57,110 원	57,110 원
	치매전담실	70,500 원	65,280 원	60,310 원	58,720 원	57,110 원	57,110 원

2. 케어포에서 단기보호 및 가족휴가제 일정 등록 방법

(1) 2-1.일정관리(공단연동) > 단기보호,가족휴가 일정 등록



- 기초작업 및 기초설정에서 단기보호 운영을 설정한 경우 '단기보호,가족휴가 일정 등록' 버튼이 추가로 보여지게 됩니다. 해당 버튼을 통해서만 단기보호,가족휴가 일정 등록이 가능합니다.

(2) 단기보호, 가족휴가 일정화면에서 단기보호 또는 가족휴가 일정 시작일 ~ 종료일과 단기보호/가족휴가 구분을 선택합니다.

-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(입소일 포함, 퇴소일 제외)

- 가족휴가제는 연 9일 이내(입소일 포함, 퇴소일 제외)

단기보호,가족휴가 일정

▶ 단기보호,가족휴가 일정 정보

수급자	강방문가족 (1등급 / 일반(15%))	성별 / 생일	여 / 1930.01.01 (만 94세)
단기보호,가족휴가 일정	2024.01.22 31 ~ 31 (시작일과 종료일을 표시)	일정 구분	☒ 단기보호 ☐ 가족휴가

2024

1월

일

월

화

수

목

금

토

1

2

3

4

5

6

(3) 단기보호 시작일의 시작시간과 종료일의 종료시간을 등록합니다.

만일, 차량이용이 필요할 경우 차량이용여부를 이용으로 선택후 시작일의 차량과 종료일의 차량을 선택합니다.

단기보호,가족휴가 일정

▶ 단기보호,가족휴가 일정 정보

수급자	곽병순 (1등급 / 감경(9%))	성별 / 생일	여 / 1943.08.31 (만 80세)
단기보호,가족휴가 일정	2024.01.22 31 ~ 2024.01.24 31 (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 일정을 선택하세요)	일정 구분	☒ 단기보호 ☐ 가족휴가

▶ 단기보호, 가족휴가 일별 상세 정보

시작일	시작시간 *	2024.01.22 (09 : 00 ~ 24:00)	일정 구분	☒ 단기보호 ☐ 가족휴가
	시작 차량이용여부	☒ 이용 ☐ 이용안함	차량선택	111 (222가 1111) ▼
중간일	일정	2024.01.23 (00:00 ~ 24:00)	일정 구분	☒ 단기보호 ☐ 가족휴가
종료일	종료시간 *	2024.01.24 (00:00 ~ 16 : 00)		
	종료 차량이용여부	☒ 이용 ☐ 이용안함	차량선택	111 (222가 1111) ▼

저장

삭제

창닫기

(4) 일정 등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‘단기보호’ 또는 ‘가족휴가’ 아이콘으로 일반 주야간일정과 구분되어 달력에 표시됩니다.

15	16	17 1건	18 1건	19 1건
		일정 09:00~24:00 (15시간) 1등급 / 감경(9%) 시작222가 1111 주야... 가족휴가	미동 00:00~24:00 (24시간) 1등급 / 감경(9%) 가족휴가	미동 00:00~18:00 (18시간) 1등급 / 감경(9%) 종료222가 1111 han... 가족휴가종료일
22 1건	23 1건	24 1건	25	26
일정 09:00~24:00 (15시간) 1등급 / 감경(9%) 시작222가 1111 주야... 단기보호	미동 00:00~24:00 (24시간) 1등급 / 감경(9%) 단기보호	미동 00:00~16:00 (16시간) 1등급 / 감경(9%) 종료222가 1111 han... 단기보호종료일		

- 일정을 수정하려면 해당 일자를 클릭하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.

3. 케어포에서 단기보호, 가족휴가제 본인부담금 생성

(1) 주야간 일정과 동일방법으로 7-1.본인부담금 청구관리에서 청구서를 생성합니다.

(2) 주야간보호 기관내 [단기보호 시범서비스 수가 계산](#)

- (주야간서비스비용) 수급자의 등급별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으로 산정

-(야간운영비용) 야간서비스(22시~다음날 08시) 운영 시 기관 1일당 비용산정(케어포에서는 계산하지 않음)

- 아래의 예시와 같이 단기보호 서비스비용은 주야간보호 비용급여비용으로 계산됩니다.

☞ 2024년 01월 청구상세 내역

식사/간식여부 수정

제공일	시작	종료	수가명	급여비용	급여비용 본인부담금	식사			간식		
						아침	점심	저녁	식사재료비	오전	오후
22 (월)	09:00	24:00	13시간 초과 야간가산	83,220	7,489.8	○	○	○	10,500	○	○
23 (화)	00:00	24:00	13시간 초과 야간가산	82,880	7,459.2	○	○	○	10,500	○	○
24 (수)	00:00	16:00	13시간 초과	78,400	7,056.0	○	○	○	10,500	○	○

(3) 주야간보호 기관내 [장기요양가족휴가제\(치매가족휴가제\) 서비스 수가 계산](#)

- (가족휴가제 서비스비용)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‘주야간보호-치매가족휴가제’ 수가를 적용하여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

▣ 2024년 01월 청구상세 내역

식사/간식여부 수정

제공일	시작	종료	수가명	급여비용	급여비용 본인부담금	식사				간식		
						아침	점심	저녁	식사재료비	오전	오후	간식비
22 (월)	14:00	24:00	가족휴가 12시간미만	35,250	3,172.5	○	○	○	10,500	○	○	1,800
23 (화)	00:00	24:00	가족휴가 12시간이상	70,500	6,345.0	○	○	○	10,500	○	○	1,800
24 (수)	00:00	16:00	13시간 초과	78,400	7,056.0	○	○	○	10,500	○	○	1,800

- 케어포의 요양급여 수가설정은 아래의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.

가족휴가 12시간미만	일반	35,250 원	32,640 원	30,160 원	29,360 원	28,560 원	28,560 원
	치매전담실	35,250 원	32,640 원	30,160 원	29,360 원	28,560 원	28,560 원
가족휴가 12시간이상	일반	70,500 원	65,280 원	60,310 원	58,720 원	57,110 원	57,110 원
	치매전담실	70,500 원	65,280 원	60,310 원	58,720 원	57,110 원	57,110 원

-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36조, 37조

제36조의3(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)

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단기보호급여의 급여비용 산정 방식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. 다만,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제37조제1항 표에 따른 마-5를 산정한다.

제37조 (단기보호 급여비용)

① 단기보호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.

분류번호	분 류	금액(원)
마-1	장기요양 1등급	70,500
마-2	장기요양 2등급	65,280
마-3	장기요양 3등급	60,310
마-4	장기요양 4등급	58,720
마-5	장기요양 5등급	57,110